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 규제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16:00-17:30

장 소 : 뉴스타파 리영희 홀

주최·주관 :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언론인권센터

토론회 일정

시간	일정
16:00 ~ 16:10	진행 : 허찬행(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인사말 :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16:10 ~ 17:30	라운드 테이블 사회 : 장낙인 교수(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토론 : 김고은 기자(기자협회보), 김종천 변호사(법무법인 태웅), 노지민 기자(미디어오늘),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정용복 박사(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토론회 기획 취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주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사실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소위 ‘가짜뉴스’라 공격한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집권 정치 세력이 주도하여 매우 합법적인 양 뉴스의 주된 유통 경로인 포털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언론진흥 기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방송통신심의 기관에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응센터>를 설치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막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이 사실에 대한 전달이나 인권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윤리적 측면에서 언론 스스로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해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면 언론중재 제도나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의 내용을 심의하고 처벌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넘어 정부가 사실상 언론에 대해 검열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행태다.

정부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정치라는 공적영역에 대한 사실 전달과, 의혹 제기를 비롯한 검증의 영역을 행정기관이 선별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이 인터넷 언론으로서 활동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의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래 기능에서 벗어난 것이다. 국가가 언론의 정부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적 도구화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문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

토론문

‘가짜뉴스와의 전쟁’ 그 100일간의 이야기

김고은 기자협회보 기자

“아니 가짜뉴스 단속하는 게 왜 언론탄압입니까. 제가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10월 26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1. ‘진짜 가짜뉴스’ 가려내기는 가능한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없다는 점은 가짜뉴스 규제 책임자를 자처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가짜뉴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대로 둘 수 없으므로 ‘선 조치 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적극행정’, ‘패스트트랙’의 중요성을 역설.

-이동관 전 위원장 등은 가짜뉴스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누가 봐도 가짜뉴스”인 건 분명히 있다며 이를 가리켜 “순진짜 가짜뉴스”라며 뉴스타파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예시로 들기도 함.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가짜뉴스 규제를 주장하며 단골처럼 입에 올리는 단어 중엔 ‘선거’, ‘자유민주주의’ 등이 있음.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주장임.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 등(4개사 6건)에 대해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음.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따로 입장문을 내어 “정치적 목적 등으로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한다면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밝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걸 가짜뉴스로 보는 겁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10월 16일 방심위 전체회의)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관심법’?

-방심위는 가짜뉴스 등을 관련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한다고 하면서 규정 밖의 ‘의도’나 ‘내심’을 파악하려 하고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를 사실상 추가하기도 함. 지난해 뉴스타파에 앞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 보도를 심의하면서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뉴스타파로 이직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의심가는 정황”(황성욱 상임위원)이라고 한 게 대표적.

-그러나 지난 2021년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관련 논란에서 보도의 ‘악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 언론사가 아닌 원고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그런데 지금은 규제기구, 행정기관이 의심하고 판단, 심판(처벌)까지 사실상 다 하는 게 현실.

-방통위는 방심위의 심의 절차가 본격 개시되기도 전인 지난 9월 8일 KBS, MBC, JTBC 등 3사만 콕 집어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함.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방통위 조사야말로 어떤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부분.

-뉴스타파 원 보도는 차치하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 ‘녹취록이 허위·조작·날조됐

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전례 없이 건당 최대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만한 것인지도 의문임.

-또한, 방심위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방송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나 후속조치가 없으면 또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가중 처벌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심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국회에서는 이 조작행위를 하는 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10월 3일, 다음 ‘클릭 응원’ 관련 기자회견)

3. ‘자율규제’라 쓰고 ‘타율규제’라 읽는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이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을 의식해 내세운 것이 ‘자율규제’임.

-방통위는 9월 18일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고, 9월 27일엔 방심위,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알리며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전함.

-그러나 바로 이틀 전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음. 앞서 방통위는 TV조선이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을 보도한 지 사흘만인 지난 7월 2일 네이버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밝히고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처럼 규제기관이 포털에 대한 조사 등을 병행하면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음. 정부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규제·사정당국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할 것이란 부담이 포털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런 배경에서 네이버가 정정보도 모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뉴스 페이지 개편을 하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중’ 표시 요청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받아들이기도 함.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난 10월 한 토론회에서 “지금 포털사는 바람보다 빠르게 늙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음.

-실제 포털사는 정치권 압박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중단, 최근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 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 다음은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중국 축구 대표팀 경기에서 ‘중국 클릭 응원’ 문제로 정부여당의 집중포화를 받았고, 이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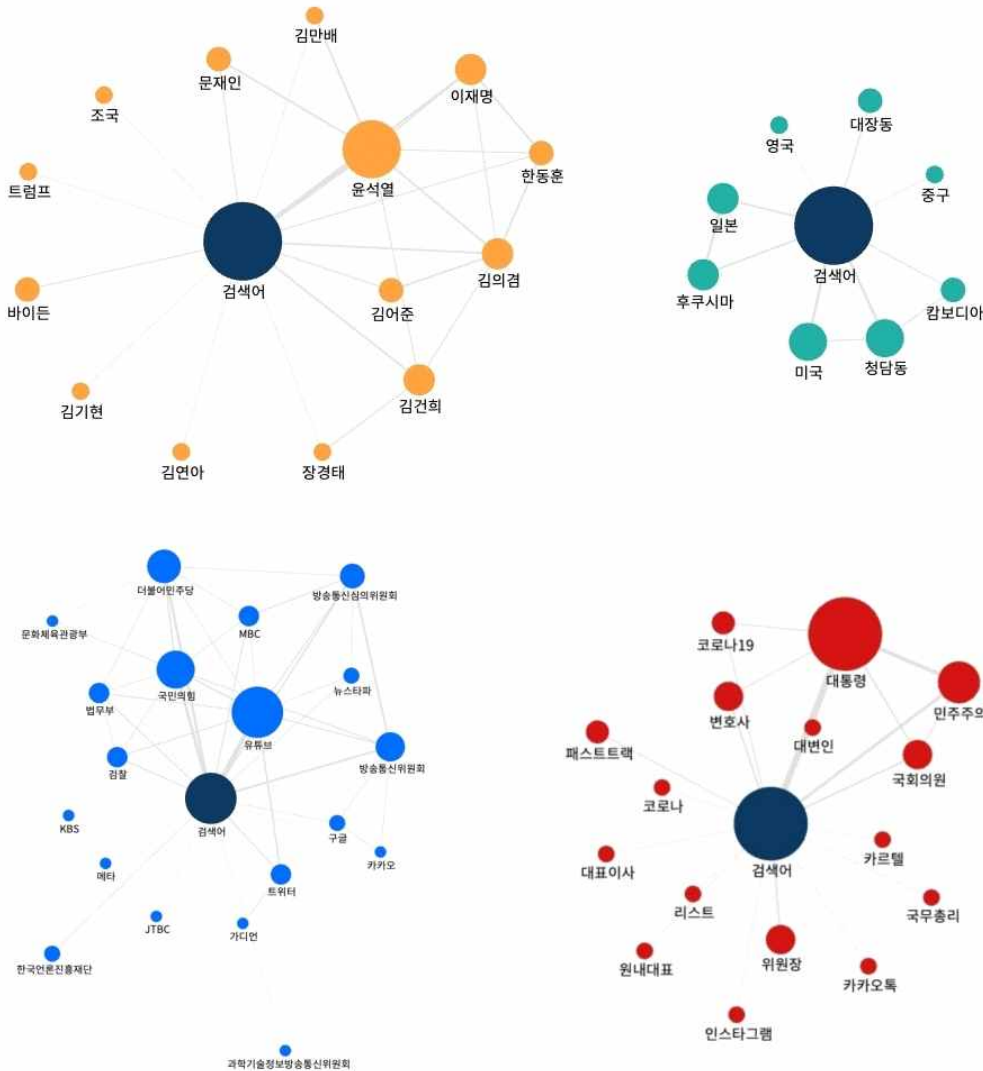
토론문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가짜뉴스’ 담론

미디어오늘 노지민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짜뉴스’ 이슈 어떻게 보도됐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2023년 12월 10일까지 약 1년7개월간 54개 매체의 ‘가짜뉴스’ 키워드 관련 기사 분석. 해당 기간 전체 기사량 11,736건, 이 가운데 ‘정치’ 분야 기사가 64.5%에 달하는 7,569건. 기타 분야는 사회 2,269건, 문화 685건, 경제 297건 등.



-관계도 분석 결과를 항목별로 보면 각 항목별 1순위는 키워드 ‘대통령’, 인물 ‘윤석열’, 기관 ‘유튜브’, 장소는 ‘청담동’ ‘미국’.

-의미망 분포 형태의 분석 결과를 보면 현 정부 들어 ‘가짜뉴스’ 관련 이슈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좀 더 뚜렷하게 보여. 인물별 분석의 경우 ‘윤석열’ 중심으로 ‘문재인’ ‘김만배’ ‘이재명’ ‘한동훈’ ‘김의겸’ ‘김건희’ 등의 키워드가 연결. 장소별로는 ‘캄보디아-청담동-미국’ ‘일본-후쿠시마’ 등의 덩어리가 두드러져.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물이 연관된 의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보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기관별 분석 결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유의미. ‘유튜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MBC-방송통신심의위-뉴스타파-방통위-트위터-검찰-법무부’ 등이 한 데 묶여.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 기구와, 언론계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 다시 말해 정권에 비판적이라 분류되는 매체들이 묶여 있어. 방통위와 방심위의 연관성이 강한 점도 특징.

-지난 1년7개월간 ‘가짜뉴스’ 보도량이 급증한 시점도 위 키워드를 보면서 예상된 특징들이 나타나. ‘가짜뉴스’ 관련 기사 1000건을 기준으로 보도량 추이를 보면 200건 이상 보도가 이뤄진 네 번의 시기가 눈에 띄어.

△(2022년) 10.23.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론된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 발언

△(2023년) 07.07.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공방

△09.06. 여권 ‘김만배 가짜뉴스’ 주장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10.10.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유인촌 문체부 장관, 국정감사 출석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크게 쟁점화된 이슈와 시기 모두 대통령 본인과 유관.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과 최측근 인사가 거론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보도되고 있는 ‘김만배 인터뷰 논란’,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한 뒤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 야권과 시민사회 반발 속에 임명된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정책 등.

2.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2년차 ‘가짜뉴스’ 쟁점화 차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통령’과 ‘가짜뉴스’ 관계가 밀접할 거라고 예상. 아주 틀린 가정은 아니었지만 차이가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음.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 1년 7개월간 ‘가짜뉴스’ 보도를 검색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

망으로 묶였다는 점에선 윤석열 정부와 공통적.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간 연결.

-기사 1000건 기준 보도량 추이를 살펴봤을 땐 200건 이상인 주간이 2018년 10월 10일 주간 딱 한 번. 국정감사 시즌이었던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짜뉴스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하자 여야 양측에서 지적이 제기됐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자율규제'를 강조한 사안 등이 주요 이슈로 보도돼.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신속 수사'와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쟁점화된 뒤로 규제의 정당성을 논하는 이슈나 관련 보도가 이어진 양상.

3. 극단적 '가짜뉴스 전쟁', 절대 다수와 소수 나뉜 언론 지형

-분석 범주 등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짜뉴스' 보도가 대통령의 발화를 발단으로 이어지는 정부 규제에 치우친 경향성을 띄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토론회나 보도를 통해 지적된 문제. 다만 이런 보도가 어떤 논조



와 관점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가장 한 눈에 대비할 만한 사례로 관계도 분석 당시 ‘대통령’ 중심 의미망과 연관된 뉴스 목록의 상위권 비교. 이번엔 먼저 문재인 정부 시기. 언론사 논조를 대표하는 사설류를 보면 서울신문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 문화일보 <방향 잘못 잡은 문 정권 가짜뉴스 대책과 ‘표현의 자유’>, 아래 사서는 아니지만 조선일보 기사의 경우 ‘가짜뉴스 엄단’은 위협한 이야기라는 여권 정치인의 주장을 전하고 있어. 일견 합리적인 지적들로 보이는 기사들.

-지금의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연결망과 관련된 상위권 기사들은. 우선 여권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 위협 엄중 대응”하겠다고 하는 기사와, 윤 대통령을 ‘커피 보도 피해자’로 상정한 기사가 먼저 보이고. 서울신문 사설 <가짜뉴스 전방위 대응 필요성 보여준 ‘일광 횡집’ 소동>, 문체등 범정부 ‘가짜뉴스’ 대응, 대통령실이 MBC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취재윤리 상반된 국익훼손”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속보 등.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기 관련 뉴스로 모두 서울신문 사설을 봤는데, 서울신문의 경우 호반건설이 사주가 되면서 다소 보수화됐다고 평가 받는 상황. 현재 언론 지형을 신문계만 놓고 본다면 주요 10대 일간지로 불리는 곳들 가운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곳은 한겨레, 경향, 사안에 따라 한국일보 정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규제’ 문제를 질타했던 보수성향 언론들이 지금은 그만큼의 각을 세우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의 견제가 약화되는 문제.

-나아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정답에 가까운 논의들이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필요. ‘가짜뉴스’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초적 제안조차 언론의 취재나 보도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 반대하는 언론만 반대하는 것처럼 굳어진 구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과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협회, 이 밖의 언론 관련 직능단체들과 매체별로 생산되는 기사간의 괴리라는 한계도 고민해볼 지점. ‘가짜뉴스’ 관련 보도 뿐 아니라 언론, 미디어 정책에 관한 사안에 대해 현업 단체가 내는 목소리와 주장이 언론 현장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 ‘가짜뉴스’ 출처로 지목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고소, 고발 대상이 되는 문제 반복. ‘사실관계 확인’을 명목으로 한 내부 검열 분위기에 대한 우려, 언론사 스스로 ‘가짜뉴스’ 색출 분위기에 순응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권력자들과 가까워야 하는 출입처 기반 취재 환경과 성과 중심 평가 체제가 유지되는 환경, 언론계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현장에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가짜뉴스’ 담론 해체 시도가 언론계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토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의 위헌, 위법성

이희영 (민변 언론위원회)

1.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정치적 오남용

가짜뉴스는 대체로 언론 보도(기사)의 형식을 갖춘 의도적인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가리킨다. 법적인 적용에 앞서 이러한 일반적, 학술적인 정의를 적용하는 데조차 문제가 있으니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된 시대에 언론 보도라는 형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 악의적인 의도와 목적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영역은 주로 정치권이다. 정치인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거짓 주장이나 정보가 정치 혐오와 사회적 갈등, 여론 양극화를 부추겨 선거 등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논의 역시 그 진정한 해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정파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을 비판하는 보도나 표현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허위 조작정보의 조직적 생성과 유포¹⁾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미 관련 규제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는 일반적인 미디어의 표현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향부터 어긋나 있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쟁점

가. 가짜뉴스 관련 기존의 법적 규제

언론 보도의 형식을 갖춘 의도적인 허위 또는 조작 정보라는 가짜뉴스의 일반적 정의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사실 표현이 초래하는 피해를 규제하는 기존의 법률들이 있다. 다만 헌법과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1)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개인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 생성, 유포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가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인권을 남용하고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로 일반적 허위표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위표현으로 인한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문제 삼는다.

허위사실의 표현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침해된 구체적인 권리에 따라 형법상 신용훼손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의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등이 적용되며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허위표현 규제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허위표시 등으로 규제한다.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로 피해가 있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보도와 손해배상, 시정권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언론사는 정보통신망법의 내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규제가 아닌 조정의 대상으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해 왔다. 이처럼 현행 법제에서도 허위표현이 가져오는 구체적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규제 및 구제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추가적으로 규제하려면 현 법체계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인 규제 공백이 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

나. 방통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의 위법성: 법적 근거 부재

방심위는 2023. 9. 21.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까지 통신심의의 대상이라고 밝히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3. 9. 27. 가짜뉴스대응 민관협의체 출범을 발표하며 사업자의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한 보완 입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결국 방통위가 정책 추진의 전제가 되는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 조치를 먼저 내놓은 입법 불비 상태임을 인정한 셈이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하지만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결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므로 방심위의 모든 규제와 그 집행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법령에서 방심위의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이 언론의 자유, 시민의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이같은 조치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가 크다.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방심위의 직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²⁾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제21조 제3호)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21조 제4호)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보더라도 가짜뉴스는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만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7조 제재조치).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따라서 방심위의 정보통신 심의 대상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정한 정보가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이와 같이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제1조(목적), 제2조(정의) 1호(언론), 10호(인터넷신문), 11호(인터넷신문사업자), 12호(언론사), 15조(언론보도) 조항) 등 관련 법령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하면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는 언론중재법에 따르게 되므로,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방심위의 통신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방심위 가짜뉴스 규제의 위헌성

(1)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
-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현재는 방심위 심의와 관련한 입법 자체가 부재한 상태지만 허위사실 표현이 초래하는 피해에 대해 기존의 법률(언론중재법,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한 법적 대응과 구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소위 ‘가짜뉴스’ 규율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2) 규제 대상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가) 인터넷언론의 범위

현재 대부분의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심의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의 범위조차 불분명하다. 인터넷 언론사 기사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인터넷신문 심의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자 “‘제도권 언론’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고 하거나 기존 종이신문의 인터넷판을 방심위의 심의 대상인 인터넷언론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권 언론’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모호하며, 보통 ‘인터넷 언론’으로 부르는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2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되므로 당연히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방심위위원장은 전혀 다른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불명확성

2023. 9. 20.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2023. 10. 11.에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두고 방심위 출범 이후 최초로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그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카목을 적용했다. 위 적용조항 역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수사단계에 있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당 보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적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허위, 사실, 의도 개념의 모호성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의 통신인지 분명히 하지 못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5인은 보충의견을 통해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³⁾ 실제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실과

3) 주사파로 지목한 표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1심, 2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의 반대의견 대법관 5인은 주사파를 사실 적시로 보았으나 대법원 다수 판결은 의견표명으로 보았다.

주장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규제범위를 ‘의도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주관적 의도를 파악하고 고의와 과실의 구별적도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을 좌우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다.

즉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번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윤석열 검사 등의 부실 수사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혹’ 제기의 근거 유무라는 기준⁴⁾조차 근거 유무 판단이 매우 어렵고 불명확하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추가조작 연루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이다. 당시 정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판결한 대법원은 BBK 특별검사의 이 전 대통령 재산관계에 대한 부실한 수사 결과 등을 기초로 “원심이 … 피고인(정 전 의원)의 이명박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고 설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을 이 전 대통령이 숨겨진 재산관계가 드러나 위 의혹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현재와 비교해보면, 근거 유무 판단이 얼마나 상대적·가변적이고 상황적 한계를 지닌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3) 사실상 내용 검열에 해당

방심위원장이 기존 신문사의 인터넷판은 심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방송 및 신문, 통신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올리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언론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결국 모든 언론의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여 최대한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시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례다.

정정보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보도의 진실성을 심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행정기관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표현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진실을 독점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 14375 판결)에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3. 나가며-제언

가. 가짜뉴스 용어의 퇴출

유럽집행위원회와 영국 정부는 2018년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가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했고 오히려 판단을 오도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문서나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사용을 금지하면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정보 제공자가 악의로 허위인 내용을 유포하는 정보로 좁은 의미에서 기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 오정보(Misinformation, 허위이지만 악의가 없이 전달된 정보), 악성정보(malinformation) 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국내 학자들 역시 2018년 이래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폐기하자고 주장해 왔다.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언론과 정치에서 신뢰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처럼 국가기관이 나서서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대하여 가짜뉴스라는 말을 남발하며 마구잡이로 규제와 처벌을 휘두르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오히려 다른 쪽에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여론조작이 상시적으로 일어나 극단적 여론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낙인 효과를 노리면서 실질적이고 정교한 정책 논의를 차단하는 무분별한 용어 사용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기관 개입 없는 자율 규제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의도적 허위정보가 공익을 해치는 해악이 있다고 해서 법치국가에서 명확한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곧바로 이를 규제하고 유포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온라인 표현물 규제 관련 해외의 논의나 입법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방통위, 방심위가 나서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의미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소위 ‘가짜뉴스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심의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언론보도를 행정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 신뢰성에 대해 심대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려는 알팍한 계산에서 벗어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 전체,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뉴스서비스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도입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의 법적 근거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카목(사회혼란)과 함께 제4호 다목(명예훼손)⁵⁾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정보로 인정하고 있어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살리면서도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사실 보도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 진실(사실) 보도에 관해서는 형사 사법절차를 남용하는 피해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한편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악의적, 반복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실질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통해 저널리즘 본질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라. 언론 생산자, 소비자에 모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5)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토론문

가짜뉴스의 담론적 도구화⁶⁾

정용복(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장, 언론학박사)⁷⁾

1. 들어가며

가짜뉴스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으로 전 세계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며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과잉과는 모순적으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정보를 찾기 어려워하는 '정보 결핍'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국제연합(UN)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이르기까지 국제기구들은 가짜뉴스를 현재와 미래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Hacıyakupoglu et al., 2018). 또한 정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며 전면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근절을 정부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하는 TF는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신고·상담'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를 만든 언론사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자율규제 실무 협의체'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계에서 밝혀낸 가짜뉴스가 사회 제도에 미치는 경험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넘어, 새로운 연구들은 가짜뉴스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론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담론은 어떤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로서 기본적으로 언어로 이뤄진다. 언어는 사람들이 사고하고 상호 작용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이다. 개별 언어의 구조와 특성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제약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주요 문제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객관적 현실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구체화한다(Zandberg, 2010). 즉 담론이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담론과 그 체계는 어떤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인과 집단이 세상을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써 현실을 만들어 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6) 본 주제는 토론자로서 아직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며, 아직 진행형인 초기 연구 주제임을 밝힙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학문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와 언론인권센터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 cyk1997@hanmail.net

2. 가짜뉴스의 본질적 물음에 대한 딜레마

가짜뉴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저널리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 왔다(Tandoc & Kim, 2022). 그런데도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그 영향력과 파급력에 있다. 즉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파생된 전통 미디어의 재정적 붕괴, 디지털 환경의 즉시성, 부정확한 목적으로 인해 생성된 허위 정보와 그 허위 정보의 빠른 유통, 담론의 감정화 증가, 소셜 미디어와 검색엔진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창출하는 수익에 관한 가짜뉴스의 과대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Bakir & McStay, 2018).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널리즘의 품질과 윤리 의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지만, 학자들은 이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Hobbs, Seyferth-Zapf, & Grafe, 2018).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뉴스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허위 정보로 설명된다(Gelfert, 2018). 또한 가짜뉴스를 의도적이고 검증할 수 없는 허위 정보로 정의하며, 이는 독자를 오도할 수 있는 뉴스 기사로 이해된다(Allcott & Gentzkow, 2017). 게다가 가짜뉴스의 범위에는 허위 및 조작 정보는 물론 찌라시 정보, 언론사 오보 등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뉴스도 함께 포함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양정애, 2019).

뉴스는 사실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그것은 최신의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Kershner, 2005),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설명해야 한다(Richardson, 2007). 또한 뉴스는 새롭거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극적으로 설명하며(Jamieson & Campbell, 1997),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Kovach & Rosenstiel, 2014).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자유와 자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다. 가짜뉴스 제공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종종 신뢰를 훼손한다. 이와 더불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는 입소문을 타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광고 수익을 끌어올 수 있는 클릭 수를 증가시킨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현재 하나의 용어로 다루어지지만, 초기 연구들은 이를 뉴스 패러디, 정치 풍자, 광고, 선전과 같은 다른 유형의 콘텐츠와 연관시키고 별도의 유형으로 정의해 왔다(Tandoc, Lim, & Ling, 2018). 이들 콘텐츠는 서로 다른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실제 뉴스와 유사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통해 웹사이트의 디자인부터 기사의 작성 방식, 출처 표시 방식까지 실제 뉴스와 유사한 외형을 취한다. 그러나 뉴스는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모순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 2018)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모호성과 개념적 설명의 약점으로 인해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 허위 정보(Dis-information, 개인, 사회 집단, 조직 또는 국가에 해를 끼치려고 일부러 만들어진 허위 정보), 오보(Mis-information, 허위 정보이지만 해를 끼칠 의도로 작성되지 않는 정보), 악성 정보(Mal-information, 개인, 사회

집단, 조직 또는 국가에 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허위 정보와 오보, 악성 정보를 구분하여 해를 끼치는 의도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와 실수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고 있다(Wardle, 2017). 유네스코는 가짜뉴스가 디지털 시대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규제하는 데 사용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를 약화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규제의 대상을 허위 정보와 오보로 두고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2018년에 영국은 허위 정보 조사와 소셜 미디어가 선거에 악용될 우려를 다루기 위해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위원회(The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2019)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이 지적한 우려를 많이 반영하여 '가짜뉴스' 대신 '허위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언론 및 기술 기업이 자사 사이트의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해로운 콘텐츠를 정의하는 윤리 강령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언론 및 기술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강령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고했다.

가짜뉴스가 인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 방지할 수도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등 다른 인권 문제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며, 공론의 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 사상, 의견도 통제되지 않은 채 활발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박종현, 2022).

따라서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한계는 규제가 필요한 가짜뉴스의 속성과 범주, 종류를 규정하는 것부터, 누가 규제를 담당해야 하는지, 규제 당사자가 자신에게 사회정치적으로 유리한 가짜뉴스에 대해 무임승차권을 발급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제도적 규제의 수준과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도적인 행위와 무고(無辜)하게 된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깊고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뉴스는 언론인들이 만들어 내지만, 가짜뉴스의 소비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뉴스를 진짜로 여기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로서는 뉴스가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의도와 무엇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전달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율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Carr, Cuervo Sanchez, & Daros, 2020).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많은 논의가 뉴스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확증 편향(Ecker, Lewandowsky, Fenton, & Martin, 2014), 선택적 노출(Del Vicario et al., 2016), 의제 설정(Vargo, Guo, & Amazeen, 2018)과 같은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이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의 확산을 설명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뉴스 소비자들의 선택적 노출이 에코 챔버와 필터버블(Pariser, 2011;

Wardle & Derakhshan, 2017)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확증 편향과 선택적 노출과 연관성이 높으며, 복잡한 미디어 환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측면이다.

가짜뉴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저작 자유론(On Liberty, 1859)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사상의 자유는 유해하든 유해하지 않든 모든 종류의 표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는 각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는 표현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짜뉴스는 인간 자유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라는 것이다(Waldman, 2018).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사상과 표현에서 최고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신념, 생각, 사상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채택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국가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후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가짜뉴스의 담론적 도구화

가짜뉴스에 대한 담론적 도구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위협이라고 경고해 왔다(Allcott & Gentzkow, 2017). 가짜뉴스는 현대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공식적인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활용되는 강력한 담론의 도구가 됐다(Neo, 2020). 가짜뉴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난은 언론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단체로 묘사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Albright, 2017).

가짜뉴스는 정치적 양극화와 당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주요한 원인이 된다.

정치 영역에서 허위 정보와 오보는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논란이 많은 법안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소문, 편견, 그리고 공포를 이용하여 설득하거나 속이거나 조종하는 데 활용된다(Carr, Cuervo Sanchez, & Daros, 2020).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발생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 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가짜뉴스가 급증했는데(Shu, Sliva, Wang, Tang, & Liu, 2017), 워싱턴D.C의 한 피자 가게를 둘러싼 사건이 그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거짓 정보로, 그 내용은 힐러리 클린턴과 그녀의 선거 매니저였던 존 포데스타가 운영하는 지하 아동 성매매 조직의 본부가 있다는 것이었다(Lopez, 2016). 이 외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허위 뉴스부터, 트럼프가 아프

리카와 멕시코로 무료 편도 항공권을 제공한다는 가짜 소문, 심지어 IS 지도자가 미국 무슬림 유권자들에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라고 촉구한다는 거짓 뉴스까지 미국 성인의 약 75%가 가짜뉴스 헤드라인에 속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Silverman, 2016). 이러한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대중을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ersily, 2017). 이러한 사건들은 가짜뉴스 연구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시민들의 신뢰를 약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결과는 사람들이 모든 뉴스를 덜 신뢰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러바인(Levine, 2019)의 진실-기본값이론(Truth-Default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기본적으로 진실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기본적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Levine, 2014). 이러한 경험적 성향은 '진실성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은 진실에 편향되어 있어 거짓보다 진실한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로 인해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올해의 국제단어로 선정한 '탈진실(Post-truth)'과 같은 용어의 사용 증가는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발했다. '탈진실'이란 사실이나 현실이 중요시되지 않고 감정, 믿음, 개인적 신념 등이 사회적, 정치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가리키며, 이는 종종 사실과 현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특정 의견이나 시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실이나 진실보다 사람들의 믿음, 정서, 개인적인 신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쉽게 전파되고 공유되는 시대에 더 많이 나타난다. '탈진실'은 사실과 현실에 근거한 의견 형성과 결정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 불신, 혼란,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담론적 도구화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혼란을 넘어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저널리즘 산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짜뉴스의 담론적 도구화는 단순히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넘어서 저널리즘 산업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가짜뉴스가 단순히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한 미디어를 비방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오(Neo, 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4개국의 450건의 가짜뉴스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가짜뉴스는 사회의 기본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실존적 안보 문제로 프레임 되고 있다. 둘째, 가짜뉴스는 전례 없는 새로운 현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테러, 화학 공격, 사이버 전쟁 등 다른 안보 위협과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되고 있다. 셋째, 가짜뉴스의 위협은 글로벌 민주주의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광범위한 법안 통과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말 언론이란 비난을 쉽게 하는데 사용된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가 시민의 자유를 억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담론적 도구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가짜뉴스가 단순히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방하는 데도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가짜뉴스의 담론적 도구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도 제한적인 상황이다(Egelhofer & Lecheler, 2019). 그런데도 선행 연구는 미디어 신뢰가 낮은 사람은 정치문제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며 가짜뉴스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조은희, 2019; 손승혜 외 2018).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 신뢰도 하락은 이러한 담론적 도구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언론 신뢰도는 언론의 결과물인 기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작성한 기자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민영, 2016). 그 결과, 이는 언론 소비자가 기사의 질이나 언론사, 기자의 능력을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정학구·김대중, 2022). 그렇지만 가짜뉴스가 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언론의 존재 이유인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왜곡시키고, 공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언론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는 의심도 있지만, 언론이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언론이 균형 잡힌 정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감시견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감시하고 보도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한다. 언론은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교정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가짜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경로로 주류 언론을 꼽는다(한국정치학회, 2020). 정부가 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인권과 언론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표현과 공정한 보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역할을 보존하면서도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4. 비판적 담론분석과 가짜뉴스 담론

방법론적으로 비판적 담론분석(CDA)은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로 사회적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airclough & Wodak, 1997). 그리하여 비판적 담론분석은 언어 사용의 기저에 있는 숨겨진 권력관계를 밝히고 미디어의 담론적 관행을 밝히는 데 학술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Khosravini, 2014; van Dijk, 1996; Wodak & Meyer, 2009).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 관행, 행위, 규범이 특정 환경에서 뿌리는 내리는 이유를 밝히고 정책이 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제를 드러내는 능력에 있다(Hajer & Versteeg, 2005). 텍스트와 사회의 연결고리로서 담론은 역사적이며 사회와 문화를 구성함과 동시에 이데올로기 작업을 수행하며, 담론분석은 해석적이고 설명이어야 하며, 일종의 사회 문제의 해결이자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Fairclough & Wodak, 1997). 따라서 담론을 연구하면 국가 행위자들이 정책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담론 동

기를 드러낼 수 있다.

페어클로우(Fairclough, 2013)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4단계 수행을 제안했는데, 그중 첫째 단계는 담론과 실천이 서로를 어떻게 상호강화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건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잘못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 다이크(Van Dijk, 2001)은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명확한 사회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그들의 관점을 제시하고 지배와 사회적 불의로 고통받는 집단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잘못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에 대해 가짜뉴스 프레임을 남용하는 것이다. 2단계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주요 단계로 연구 목표와 관련된 텍스트와 주제를 선정하고 텍스트에 대한 학제적, 언어적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잘못에 대한 논의와 더 넓은 사회에 대한 함의를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석은 가짜뉴스가 정부에 의해 어떻게 개념화되고, 가짜뉴스가 위협하는 것이 이러한 정부 행위자들의 노림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짜뉴스가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고 사회의 언론 자유 훼손을 포함한 특정 결과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5. 가짜뉴스에 대한 회복력(해결책) 향상 방안

가짜뉴스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퍼져나간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가짜 정보가 만들어진다. 가짜뉴스는 실제 정보를 왜곡하고 오염시킨다. 이는 사람들의 지식을 왜곡시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디지털 시대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학교와 사회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이다.

가짜뉴스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한다(Hobbs, 2017; Goldberg, 2017).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접근, 분석, 평가, 창작,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Mihailidis, 2018).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비 규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법적 조치보다 가짜뉴스의 영향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훨씬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는 가짜뉴스의 회복력을 위한 필수적인 차원이다(Fleming, 2014; Klemans & Eggink, 2016). 리터러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해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며(Street, 1984), 교육적 관점에서 리터러시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접근방식을 의미한다(Buckingham, 2007). 이처럼 리터러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사회 질서의 해체에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참여하며,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Martin & Grudziecki, 2006). 사람들에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식별하고 가짜뉴스를 구

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학자들은 고령층의 제한된 디지털 리터러시가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Brashier & Schacter, 2020).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연구자들의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또는 정보 신뢰성 판단, 출처 및 증거 평가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ozyreva, Lewandowsky, & Hertwig, 2020).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및 인터넷 관련 기술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argittai, Piper, & Morris, 2019). 고령층은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며 현대 미디어 기술 및 플랫폼이 업무 및 개인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 경험이 적을 수 있다(Friemel, 2016). 또한 기술 자체가 시각적으로 읽기 불편한 작은 텍스트 크기, 터치스크린 입력에 대한 의존도 등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용된다(Berenguer et al., 201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젊은 세대에게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Kahne & Bowyer, 2017).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교육은 거의 없으며, 엄격하게 평가된 교육은 더욱 드물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입으로 인해 개인이 모든 뉴스를 더 의심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이 매일 소비하는 대부분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확도는 낮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차지하는 거짓 뉴스에 관한 판단은 더욱 정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Moore & Hancock, 2022). 뉴스 원천에 대한 신뢰의 의미와 정보 제공자들을 강조하고, 이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안보다는 사회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방안이 너무 강력하다면, 이는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규제가 오히려 의견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이 있고 투명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정보를 믿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이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가짜뉴스 대응에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언론, 사회, 교육 기관, 기업, 그리고 정부는 함께 노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들의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가짜뉴스에 대한 협의적 논의에 따른 민주적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협력과 교육에 더 큰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언론사와 플랫폼 협력도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거짓 정보를 식별하고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게시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가짜뉴스를 식별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Shu, Sliva, Wang, Tang, & Liu, 2017).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게시되고 공개될 위험이 매우 크다. 널리 사용되는 가짜뉴스 탐지 방법은 뉴스 콘텐츠와 사회적 맥락 기반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와 같은 기술 전반에 걸쳐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람의 직접 개입과 기술적 개입의 일환인 알고리즘이 모두 포함된다(Jadhav & Thepade, 2019). 사람의 개입은 전문가 평가단이 뉴스를 사실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집계하는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가 기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는 사용자 기사 등급, 사용자가 출처 자체를 평가하는 사용자 출처 등급 등이 있다(Kim, Moravec, & Dennis, 2019). 기술적 개입에 의한 뉴스 콘텐츠 기반 특징은 가짜뉴스 식별을 위해 주로 텍스트 측면과 시각적 측면에서 추출된다. 텍스트적 특징으로는 가짜뉴스 콘텐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나 정서 외에도 명시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가짜뉴스 탐지를 위해 콘텐츠 및 컨텍스트 수준 정보를 활용한 탐지 접근법을 탐색하고 연구했다. 사진이나 녹음과 같은 시각적 요소에서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여 가짜뉴스의 다양한 특징을 포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성 증진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치적 시민 참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 및 뉴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 정치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 참여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Carr & Thesee, 2019). 바키르와 맥스테이(Bakir & McStay, 2018)는 가짜뉴스가 만들어 내는 상황이 사회적으로나 민주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가짜뉴스의 감정적이고 도발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이 메아리방에 갇혀 감정적으로 양극화되고 분노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파되며 확산한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민성 역량의 증진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시민성은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참여와 공동체적 책임을 내포하며, 사회적 의무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시민성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대화는 서로 다른 견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시민성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성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이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짜뉴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미디어를 더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소비할 수 있으며, 가짜뉴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민영 (2016). 신뢰의 조건: 저널리즘 전문성과 정파적 편향성이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권 6호, 127-56.
- 박종현 (2022).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논의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에 대한 검토: 미국과 한국의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21(3), 1-48.
- 손승혜·이귀옥·홍주현·최지향·정은정 (2018). 트위터는 어떻게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는가?: <교통법규 개정설>과 <9월 전쟁설>의 트위터 유통 패턴과 유력자, 빈출단어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권 4호.
- 양정애 (2019).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 <미디어이슈> 5권 1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학구·김대중 (2022). 언론수용자의 정치성향과 언론에 대한 평가가 가짜뉴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언론전문성과 언론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6권 4호, 39-67.
- 조은희 (2019). 뉴스 미디어의 이용과 신뢰가 가짜 뉴스의 인식, 식별,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80-213.
- 한국정치학회 (2020). <21대 총선 일반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 한국정치학회.
- Albright, J. (2017). Welcome to the era of fake news. *Media and Communication*, 5(2) 87-89.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31(2), 211-236.
- Bakir, V., & McStay, A. (2018). Fake news and the economy of emotions. *Digital Journalism*, 6(2), 154-175.
- Berenguer, A., Goncalves, J., Hosio, S., Ferreira, D., Anagnostopoulos, T., & Kostakos, V. (2017). Are smartphones ubiquitous?: An in-depth survey of smartphone adoption by seniors. *IEEE Consumer Electronics Magazine*, 6(1), 104-110.
- Brashier, N. M., & Schacter, D. L. (2020). Aging in an era of fake new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9(3), 316-323.
- Buckingham, D. (2007). Digital Media Literacies: Rethinking Media Education in the Age of the Internet.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2(1), 43-55.
- Carr, P. R., Cuervo Sanchez, S. L., & Daros, M. A. (2020). Citizen engagement in the contemporary era of fake news: hegemonic distraction or control of the social media context?.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2(1), 39-60.
- Carr, P. R., & Thesee, G. (2019). *It's not education that scares me, it's the educators...": Is there still hope for democracy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democracy?*. Gorham, ME: Myers Education Press.
- Del Vicario, M., Bessi, A., Zollo, F., Petroni, F., Scala, A., Caldarelli, G., Stanley, H. E., & Quattrociocchi, W. (2016). The spreading of misinformation online. *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3(3), 554-559.

- Ecker, U., Lewandowsky, S., Fenton, O., & Martin, K. (2014). Do people keep believing because they want to? Preexisting attitudes and the continued influence of misinformation. *Memory & Cognition*, *42*, 292–304.
- Egelhofer, J. L., & Lecheler, S. (2019). Fake news as a two-dimensional phenomenon: a framework and research agenda.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3*(2), 97–116.
- Fairclough, N. L. (2013).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don; New York, NY: Routledge.
- Fairclough, N. L., & Wodak, R. (1997).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 A. van Dijk (ed.), *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Vol. 2.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pp. 258–284). London: Sage.
- Fleming, J. (2014). Media literacy, news literacy, or news appreciation? A case study of the news literacy program at Stony Brook Univers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69*(2), 146–165.
- Friemel, T. N. (2016). The digital divide has grown old: Determinants of a digital divide among seniors. *New Media & Society* *18*(2), 313–331.
- Gelfert, A. (2018). Fake news: A definition. *Informal Logic*, *38*, 84–117.
- Goldberg, D. (2017). Responding to Fake News: Is There an Alternative to Law and Regulation. *Southwestern Law Review*, *47*, 417–448.
- Hacıyakupoglu G, Hui JY, & Suguna V. (2018). *Countering Fake News: A Survey of Recent Global Initiatives*.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Hajer, M., & Versteeg, W. (2005). A Decade of Discourse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tics: Achievements, Challenges, Perspectives.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7*, 175–184.
- Hargittai, E., Piper, A. M., & Morris, M. R. (2019). From internet access to internet skills: Digital inequality among older adults. *Universal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18*(4), 881–890.
- Higdon, N. (2020). What is Fake News? A Foundational Question for Developing Effective Critical News Literacy Education. *Democratic Communique*, *29*(1), 1–18.
- Hobbs, R., Seyferth-Zapf, C., & Grafe, S. (2018). Using Virtual Exchange to Advance Media Literacy Competencies through Analysis of Contemporary Propaganda.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10*(2), 152–168.
- Hobbs, R. (2017). Teach the conspiracies. *Knowledge Quest*, *46*(1), 16–24.
- Jadhav, S. S., & Thepade, S. D. (2019). Fake News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Using DSSM and Improved Recurrent Neural Network Classifier. *Applied Artificial Intelligence*, *33*(12), 1058–1068.
- Jamieson, K., H., & Campbell, K., K. (1997). *The Interplay of Influence: News, Advertising, Politics and The Mass Media*. Belmont: Wadsworth.
- Kahne, J., & Bowyer, B. (2017). Educating for democracy in a partisan age: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motivated reasoning and misinform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 Journal*, 54(1), 3–34.
- Kershner, J. W. (2005). *The Elements of News Writing*. Boston, MA: Pearson Allyn and Bacon.
- Khosravini, M. (2014). Immigration Discourse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ynamics of World Events and Immigration Representations in the British Press. In: Hart, C; Cap, P, ed. *Contemporary Critical Discourse Studies* (pp.501–519).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Kim, A., Moravec, P. L., & Dennis, A. R. (2019). Combating Fake News on Social Media with Source Ratings: The Effects of User and Expert Reputation Rating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6(3), 931–968.
- Kleemans, M., & Eggink, G. (2016). Understanding news: The impact of media literacy education on teenagers' news literacy. *Journal of Education*, 5(1), 74–88.
-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3rd rev ed.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Kozyreva, A., Lewandowsky, S., & Hertwig, R. (2020). Citizens versus the internet: Confronting digital challenges with cognitive tool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21(3), 103–156.
- Levine, T. R. (2014). Truth-Default Theory (TDT): A theory of human deception and deception detec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33(4), 378–392.
- Levine, T. R. (2019). *Duped: Truth-Default Theory and the Social Science of Lying and Deception*. Tuscaloosa,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Lischka, J. A. (2019). A Badge of Honor? How The New York Times discredits President Trump's fake news accusations. *Journalism Studies*, 20(2), 287–304.
- Lopez, German. 2016. "Pizzagate, the Fake News Conspiracy Theory that Led a Gunman to DC's Comet Ping Pong, Explained." Vox, <http://www.vox.com/policy-and-politics/2016/12/5/13842258/pizzagate-comet-ping-pong-fake-news>
- Martin, A., & Grudziecki, J. (2006). *DigEuLit: Concepts and Tools for Digital Literacy Development*. University of Glasgow, Scotland. Retrieved online April 30, 2010 from: ics.heacademy.ac.uk/italics/vol5iss4/martin-grudziecki.pdf.
- Mihailidis, P. (2018). Civic media literacies: re-Imagining engagement for civic intentionality.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3(2), 152–164.
- Moore, R. C., & Hancock, J. T. (2022). A digital media literacy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 improves resilience to fake news. *Scientific reports*, 12(1), 1–9.
- Neo, R. (2020). A cudgel of repression: Analysing state instrumentalisation of the, 'fake news' label in Southeast Asia. *Journalism*, 23(9), 1919–1938.
-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How the New Personalized Web Is Changing What We Read and How We Think*. Penguin Books: New York, NY, USA.
- Persily, N. (2017). The 2016 us election: Can democracy survive the internet? *Journal of Democracy*, 28, 63–76.

- Richardson, B. (2007). *The Process of Writing News: From Information to Story*. Boston, MA: Pearson.
- Shu, K., Sliva, A., Wang, S., Tang, J., & Liu, H. (2017). Fake news detection on social media: A data mining perspective. *ACM SIGKDD explorations newsletter*, 19, 22–36.
- Silverman, Craig. 2016. Here are 50 of the Biggest Fake News Hits on Facebook from 2016. BuzzFeed,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top-fake-news-of-2016?utm_term=.iqzA7qdxG#.ihMA0kVRx.
- Street, B. (1984).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doc, E. C., Jenkins, J., & Craft, S. (2019). Fake news as a critical incident in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 13(6), 673–689.
- Tandoc, E. C., & Kim, H. K. (2022). Avoiding real news, believing in fake news? Investigating pathways from information overload to misbelief. *Journalism*, 24(6) 1174–1192.
- Tandoc, E. C., Lim, Z. W., & Ling, R. (2018). Defining “Fake News”: A Typology of Scholarly Definitions. *Digital Journalism*, 6, 137–153.
- The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2019).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Final Report* (HC 2017–19, 1791).
- UNESCO (2018).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A Handbook for Journalism Education and Training*.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552>
- Van Dijk, T. A. (1996). Discourse, power and access. In R. C. Caldas-Coulthard and M. Coulthard (eds), *Texts and Practices: Readings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p. 84–104).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Van Dijk, T. A. (200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D. Tannen, D. Schiffrin, & H. Hamilton (Eds.),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pp. 352–371). Oxford: Blackwell.
- Vargo, C. J., Guo, L., & Amazeen, M. A. (2018). The agenda-setting power of fake news: A big data analysis of the online media landscape from 2014 to 2016. *New Media & Society*, 20(5), 2028–2049.
- Waldman, Ari E. (2018). The marketplace of fake new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20(4), 845–870.
- Wardle, C. (2017). Fake News. It’s Complicated. <https://medium.com/1st-draft/fake-news-its-complicated-d0f773766c79>.
- Wardle, C., & Derakhshan, H.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making*. Council of Europe, Strasbourg, France.
- Wodak, R., & Meyer, M. (2009).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istory, agenda, theory. In R. Wodak and M. Meyer (eds),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2nd edn) (pp. 1–33). London: Sage.
- Zandberg, E. (2010). The right to tell the (right) story: Journalism, authority and memory. *Media, Culture & Society*, 32, 5–24.

토론문

김종천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